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 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5. 12.
- 회부일 : 2011. 5. 13.
- 상정일 : 2011. 5. 20.(제182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

제천시장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경제과장 함영득)

가. 제안이유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상호간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시장·주민·사업자의 책무 규정 신설(안 제3조 내지 제5조)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규정 신설(안 제11조 내지 제13조)
- 대규모 점포등록 및 조건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15조)
-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상학)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제3항과 제13조의3 제1항 및 제3항이 2013년 11월 23일까지의 한시적인 개정 위임 법률임을 근거로 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 산업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보호

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현행 제천시 유통업 상생 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 「행정절차법」에 의거 2011년 3월 29일부터 2011년 4월 18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으며, 2011년 5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 법적 하자는 없으며,
- 본 개정 조례안에 있어 전통시장 현황 및 전통상업구역 지정범위를 제천시 6개소의 전통시장 어느 하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위임 법률에 의거 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4. 질의 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제8조에서 제2호의 박람회·전시회 지원범위와 제7호 소상공인 지원 단체, 제9호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제7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포함 된것인지?(양순경 위원)

나.·답변요지 (경제과장 함영득)

- 박람회 전시회 지원범위는 전국 규모로 개최되는 전통시장 박람회 등을 말하며, 소상공인 지원 관련 단체는 상인회가 주가 되며 시장 경영진홍원과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포함됨.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이해관계인으로 폭넓게 봐주시기 바람.
-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에 의해 별도로 두며, 유통업상생발전 협의회는 유통 발전산업에 대한 소상공인, 슈퍼조합, 전통시장 관계자, 대형점포 관련자 전체가 참여하여 상호간 협력사항과 논쟁이 되는 사항을 조정 중재 기능이 있으며, 대형마트 입점등 분쟁발생등은 중소기업청 이의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5. 소수의견

“ 없 음 ”

6. 토론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끝.